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55호
----------	--------

제출년월일 2022. 10. .
제출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다. 인구수를 반영해 투표청구 주민수 정비(안 제5조)
- 라.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 마.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바.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 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 제16조)
- 아.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1호~제7호 서식)
- 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8. 17. ~ 9. 6.(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참고 4)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나) 경 기 도 : 자치행정과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12분”을 “15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소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김포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김포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김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절차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14조 (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 (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중전의 제13조) 제2항 본문 중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를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중전의 제14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6조제2항에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중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으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을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시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행정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행정과장 박 영 상
	팀 장 직위·성명	행정팀장 최 신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박 민 아(☎253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 </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김 포 시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김포시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김포시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주민투표법」----- ----- ----- ----- ----- -----.</p>
<p>제2조 (시의 책무) ① ~ ③ (생략)</p> <p>④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조 (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 또는 ----- ----- -----.</p>
<p>제3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및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p>	<p>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삭 제></p>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 · 읍 · 면 ·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 분합에 관한 사항
2.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 · 읍 · 면 ·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 15분 -----.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② -----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입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입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에 따라 -----

③ 제2항에 따른 수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
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
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
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
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
닌 자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
-----.

④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
-----.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
항에 따른 -----
-----.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
12조의2제3항에 따른 김포시 주민투
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
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포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김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삭 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김포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제13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

<신 설>

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절차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14조 (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 (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16조 (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생략)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

제17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

-----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
-----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공표방법 등) -----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
-----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시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
-----.

[별지 제1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p> <p>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김포시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p>김 포 시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p> <p>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김포시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p>김 포 시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주소를 기재,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 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주민투표법

[시행 2022. 4. 26.]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

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제2조 (시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11.23)

제3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및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전문개정 2009.11.23]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지방채,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3, 2016.3.9)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11.23, 2016.3.9)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6.3.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김포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참고 3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

새로운 미래, 경기도 광포 신청사에서 만나요!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투표법 개정에 관한 참고 조례안 송부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504(2022.07.11.)호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4월 28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해 참고 조례안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 1부. 끝.

경 기 도



수신자 버,서-시,군(31)

지방행정주사

보 최성준

자치행정팀장 한병철

자치행정과장 권광 2022. 7. 15.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협조자 지방행정주사 유두형

시행 자치행정과-11171

(2022. 7. 15.)

접수 행정과-22967

(2022. 7. 15.)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4086 팩스번호 031-8008-2118 / gg0330@gg.go.kr

/ 대국민 공개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000(지자체명) 주민투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00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00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00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적용비율을 가급적 준수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 시도는 180일 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로 서명요청기간을 규정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또는 체류지
- 4. 서명 연월일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열람할 수 있게 규정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시도는 15일 이내, 시군구는 10일 이내로 보정기간을 규정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 운영 등) ①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록을 소집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단서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음**(다만,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위원회에 역할 부여)

※ 예)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 **주민투표 청구요건 심사 및 주민투표 대상 여부 판단 등은 현행법상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 ‘그 밖에 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

제17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 주민투표운동 제한 최소화원칙에 입각하되,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설정
※ 다만, 지역별 산업구조 및 생활 스타일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달리 규정할 수 있음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참고 4

부패영향평가 의견

-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



김 포 시



수신 행정과장
(경유)

제목 김포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행정과-26344 (2022.08.18.)호와 관련하여 「김포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귀 부서에서 요청한 개정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은 일반적인 사항의 적용사례로 각 개별법(규정)의 특성에 맞도록 용어 또는 문맥을 수정하시고 반영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부평가서 및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감 사 담 방 관 공

주무관	노정주	청원조사팀장	현진환	기술감사팀장	대필 2022. 8. 23. 조근환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9163	(2022. 8. 23.)	접수	행정과-26772	(2022. 8. 23.)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감사담당관 (사우동)	/ http://www.gimpo.go.kr		
전화번호	031-980-2074	팩스번호	031-980-2029	/ bbom24@korea.kr	/ 대국민 공개
* 소중한 개인정보, 지키면 즐거워요! *					

[별지 제4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9조 관련)

자 치 범 규 명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노정주
입 안 주 무 부 서	행정과	통보(조치)일	2022. 8. 23.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 제량규정의 구체화 필요	• 별지 제3호 서식 세부평가서를 참고하여 개선하도록 권고	

[별지 제3호 서식]

세부평가서 (제9조 관련)

자치법규명 :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대상 조문

개 정 안	개선의견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김포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1.-3.(생략) 4. <u>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개선권고) 시장의 재량으로 정하는 것은 재량의 재관성이 저하되며, 구체화 또는 삭제토록 개선권고함.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재관성

현황 및 문제점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으로 부패유발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안을 참고하여 해당 조례에 적합하게 개정